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1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시행에 따른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 배치계획에 의거

○ 저소득층 및 모자보육가정,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○ 정원의 총수 : 2,413명 ⇒ 2,416명(3명 증원)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03명 ⇒ 1,406명(3명 증원)
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14명(변동없음)
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(변동없음)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2명(변동없음)

※ 도 본청 : 2명(6급 1명, 7급 1명), 증평출장소 : 1명(8급 1명)

□ 의안전문 : 별 첨

□ 신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□ 관계법령 발췌 : 별 첨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"2,413명"을 "2,416명"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"1,403명"을 "1,406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,413명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····· ····· 2,416명 ····· ·····
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403명	1. ····· : 1,406명
2. 내지 4. (생 략)	2. 내지 4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<지방자치법>

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~⑤ (생 략)

<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>

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1. 집행기관의 정원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~④ (생 략)